##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27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임호선·정준호·김동아

문대림 • 복기왕 • 이연희

안태준 • 고민정 • 권칠승

임미애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편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험예방활동이므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발생할우려'가 있다면 임시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긴급임시

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신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경찰에서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해 직접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서 '진행 중'을 삭제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라는 불명확한 요건을 생 략함(안 제5조).
- 나.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다.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 (안 제7조).
- 라.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고,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8조의3 및 제29조제3항).
- 마. 긴급임시조치의 요건 중 가정폭력범죄의 '재발될 우려'를 '발생할

우려'로 수정하고,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 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 제40조제4항,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5조제3호).
- 사.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가정폭력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신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및 제66조).
- 아.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변안 전조치를 검사 경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의2).
- 자.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

### 법률 제 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를 "가정폭력범죄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를 "제8조에"로, "신청할"을 "청구할"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사건을"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재발될"을 "발생할"로, "사법경찰관의"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로,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를 "제29조제1항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를 "제1항의 경우 피해자"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을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로 하며,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재발될"을 "발생할"로,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 중"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전단 중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를 "법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 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를 "사법경찰관은"으로 한 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검사는"을 각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검사의"를 "가정보호사건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는"을 각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의"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검사에게"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로 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 폭력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가정폭력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 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27조제2항 중 "검사에게"를 "검사 또는 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검사와"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및"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에게"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로 한다.

3. 제11조에 따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

제40조제4항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사법경찰관, 가정폭력행위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보호관찰관"을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사법경찰관, 가정폭력행위자" 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자"를 "사법경찰관,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에 따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

제47조 중 "피해자"를 "사법경찰관, 피해자"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사법경찰관, 가정폭력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피해자"를 "사법경찰관, 피해자"로 하다.

제54조 중 "검사에게"를 "검사 또는 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로 한다.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에게"를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로, "있다"를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치장 유치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제3호 중 "검사나"를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으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으로, "사람에게는"을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문 등 출판물에 법률명 또는 사건명을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조치) <u>가정폭력범죄에</u>
<u>에</u>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	
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4. <u>제8조에</u>
따라 임시조치를 <u>신청할</u> 수	<u>청구할</u>
있음을 통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②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②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	(현행과 같음)
(생 략)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 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이 신청하면 검사는	(현행과 같음) ③ <u>검사 또는</u>
(생 략)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이 시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현행과 같음) ③ <u>검사 또는</u>
(생 략)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이 리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③ <u>검사 또는</u> 사법경찰관은
(생 략)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이 하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현행과 같음) ③ <u>검사 또는</u> 사법경찰관은
(생 략)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이 하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현행과 같음)         ③

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 지 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 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 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 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 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 세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u>-발생할</u>
피해자나
<u>그 법정대리인의제</u>
29조제1항 각 호의
,
② <u>제1항의 경우 피해자</u>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u>&lt;삭 제&gt;</u>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 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제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수있다.

②·③ (생 략)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 지기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 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 기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

<삭 제>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u>발생할</u>
제29조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u> 중</u>
<b>.</b>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
치의 청구) ①
법원에

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 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 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해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한다.

② (생 략)

제11조(<u>검사의</u> 송치) ① <u>검사는</u>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

i
② <u>사법경찰관은</u>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세9조(가정모오자진의 저디)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u> </u>
검사
<u>또는 사법경찰관은</u>
<u>.</u>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u>가정보호사건의</u> 송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 치하여야 한다.

② <u>검사는</u>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 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 에 송치할 수 있다.

<u><신 설></u>

제13조(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 자 처리)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를 구급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제10조에 따른 관할 법원이 있는시(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가정폭력

· ②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u>
,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
제13조(공시 시의 가정목력행위 자 처리) ①
ハ ハリ)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 제15조(이송) ① (생 략)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및 <u>검사에게</u>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 ③ (생 략)

<u><신 설></u>

-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 (생 략)
  - ②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 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①·③ (현행과 같음)
제	15조(이송) ① (현행과 같음)
٠,	②
	<u> </u>
	zl)l m 나
	<u>검사 또는</u>
	사법경찰관에게
제	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명 또
	는 가정폭력범죄 사건명을 신
	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
	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	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
·	(현행과 같음)
	(2)
	<u> </u>

대응하는 검찰청 <u>검사에게</u> 송 치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29조(임시조치) ①·② (생 7 략)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u>검사와</u>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⑫ (생 략)

-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7 결정) ① (생 략)
  -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u>검사에게</u> 통지하여 야 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u>검사 또는 경찰서</u>
사법경찰관에게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임시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및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에 따라 경찰이 송치
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
원에 대응하는 경찰서의 사법
경찰관에게 송치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u>.</u>

## ~ ③ (생 략)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⑥ (생 략)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 지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 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③ 제1항의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법경찰관, 가정폭력 행위자
· 
사법경찰 사법경찰 관, 보호관찰관
  ② (현행과 같음) ③
<u>사법경찰관, 가정폭력</u>

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 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 자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 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u>피해자</u>,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 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 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u>피해자</u>,

행위자
<u>.</u>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기비거키고 리긔기
<u>사법경찰관, 피해자</u>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에 따라 경찰이 송치
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
원에 대응하는 경찰서의 사법
경찰관에게 송치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차 내 건 친 회
사법경찰관 <u>,</u>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49조(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 7 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 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 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 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 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 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 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 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 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37조에 따라 처분 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u> 피해자</u>
제49조(항고) ①
ਮੇਖੀ ਸੋ ਚੋ. ਹੀ _ ਹੀ ਹੀ
<u>사법경찰관, 가정</u>
<u>폭력행위자</u>
②
<u>사법경찰관, 피해자</u>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 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u>검사에게</u> 보내야 한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7 ~ ④ (생 략)

-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 3. (생 략)
- ⑥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검사 또는 경찰서 사법경
<u> 찰관에게</u>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
<u>게</u>
<u>있으며, 해당</u>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후단
<u>삭제&gt;</u>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 1. 2. (생략)

<신 설>

② (생략)<신설>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 (생략)
- 3. 정당한 사유 없이 <u>검사나</u> 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	행죄)
-----------	----	----	-----

- 1. 2. (현행과 같음)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행위자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제 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치장 유치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과태료) ------

- 1. 2. (현행과 같음)
- 3. -----<u>검사, 사법경찰관</u>

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한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 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 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 르지 아니한 사람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

- 1. (생략)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 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 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 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 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 람

<u>또는</u>

제66조(과태료) <u>다음</u> 각 호의 어 제66조(과태료) <u>정당한 사유 없이</u> <u>제4조제2항-----사람으</u> 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 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게는----.

- 1. (현행과 같음)
-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 문 등 출판물에 법률명 또는 사건명을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